

Ⅱ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1 청소년 우대 제도

가. 개 요

○ 목 적

-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청소년에게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권고 -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해 청소년증 등 증표 제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청소년 우대시설의 종류 -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기준

○ 우대 기준

-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주요내용

- (면제 또는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 (할인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가 청소년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 권고 가능

나. 우대 시설의 종류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등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 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등

◆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40%, 여객선 10~50%
- 궁·능 : 면제~10% 내외
-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2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

다. 이용 방법

- 청소년이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청소년증

2-1

사업 개요

가. 개 요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추진경과

- 2003. 9.18 : 청소년증 발급 훈령 제정(문화관광부)
- 2003. 9.25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한국조폐공사)
- 2003.10.15 : 청소년증 시범발급 실시(서울, 대전)
- 2004. 1. 1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 실시
- 2004. 2. 9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근거 마련)
- 2005. 2.10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2007. 5. 1 : 청소년증 전산화발급 전국실시
- 2008. 8. 1 : 청소년증 발급 알리미 제도 시행
- 2010. 1. 4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발급시스템 변경
- 2011. 6. 1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3.12.17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여성가족부 - 한국조폐공사)
- 2014. 6.19 : 청소년증 수령방법(등기 또는 신청기관 방문 수령) 선택 가능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4.12.30 : 청소년증 대리인 발급신청 가능 및 신규 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5. 3.19 : 청소년증 단체 발급 추진
- 2016. 9. 1 :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MOU체결(여성가족부 - 한국조폐공사)
- 2017. 1. 11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2017. 4. 19 : 청소년증 분실(철회)신고 기능 개설
- 2017. 7. 14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8. 7. 4.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청소년증 분실 신고,
분실 철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 2024. 1. 1. : 청소년증 발급사진 규격 변경(3.5cm×4.5cm) 및 대리신청 자격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다. 기 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라.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행복e음) 운영
지방자치단체	○ 관내 청소년 우대 정책 추진 및 청소년증 관리 ○ 청소년증 발급신청, (재)발급·교부 ○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제작 및 발급현황 관리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관리
교통카드사업자	○ 전국호환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 교통카드 충전·환불 사후 관리 ○ 교통카드 제작 지원 및 사후 관리

가.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지는 하나, 발급소요기간(3주 정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24.1.1. 추가)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8세 이하 또는 19세 이상인 자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신청방법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 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신청인(본인) - 초·중·고 재학 여부 등 선택 ■ 대리신청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교통카드 기능 -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을 반드시 안내 ※ 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위해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발급신청 철회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당일(23시까지)에만 가능, 이후 재발급 필요 - 원하는 경우 교통카드명(레일플러스, 원패스, 이즐) 중 택일하여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청소년증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비 용	■ 무 료 -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 : 비교통 4,800원, 교통 7,300원

다. 신청 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대 리 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라. 수록사항

청소년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발급일, 발급기관명을 수록

마. 관계기관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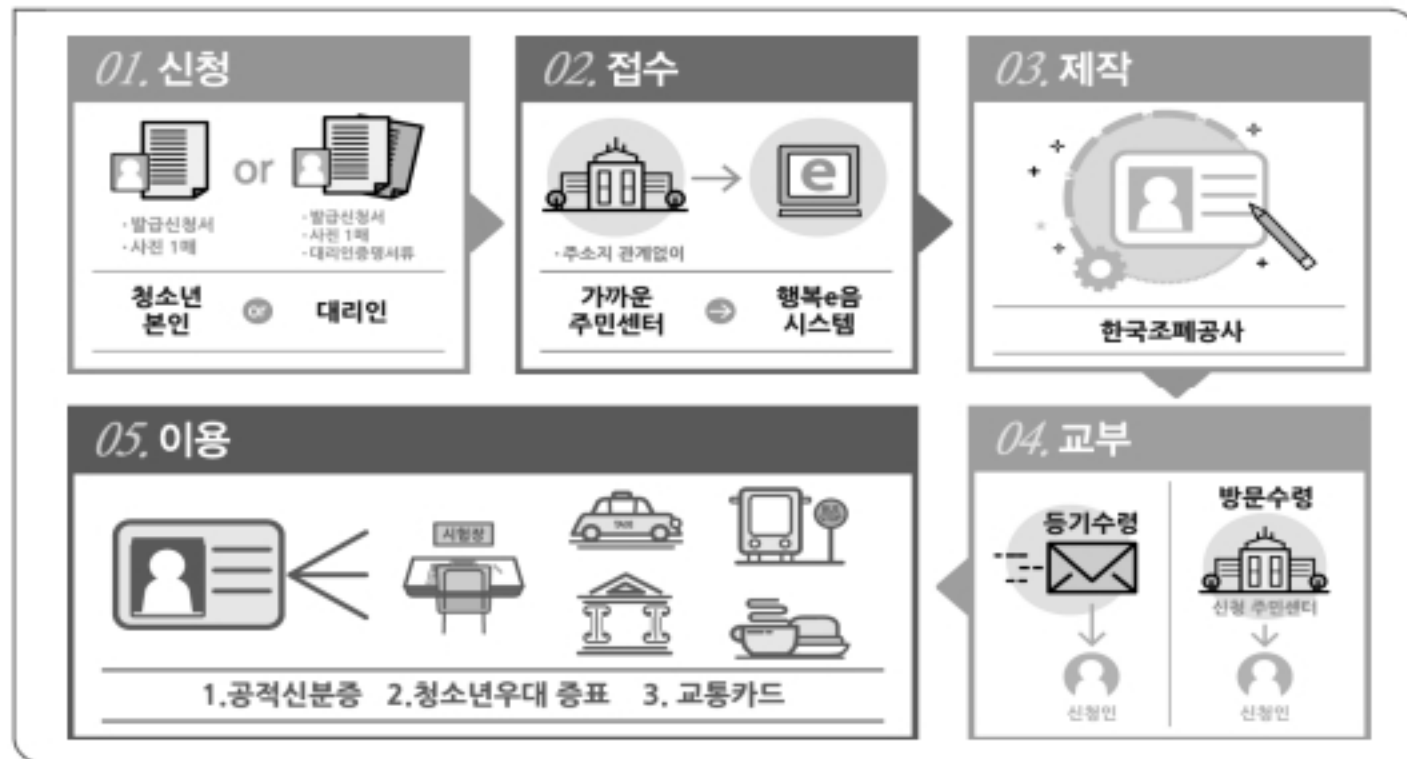
① 주민센터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 (방문수령 선택 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신청기관 방문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 후 교부
-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요금을 수령하여 접수 즉시 건별로 입금 원칙(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 계좌번호/예금주 :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② 한국조폐공사

- 방문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지 시·군·구로 청소년증을 배송
- 등기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인의 등기수령 주소로 배송의뢰(우체국)

바. 발급 절차



(1) 신 청

-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사진 요건(3.5cm×4.5cm)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읍·면·동장은 제출받은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진의 규격(3.5cm×4.5cm)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본인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 사진 규정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상의 서명(또는 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며, 대리인임을 명시하여야 함

〈대리 신청시 서명방법(예시)〉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11 월 19 일

신청인

(대리인) 공 칠 동

(서홍관동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접 수

-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받은 공무원은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
 -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지역, 가맹점 등 상세히 안내하고,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함을 알려야 함(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여권을 지참 또는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신청받은 공무원이 기본증명서 조화를 통해 본인 신분확인을 철저히 할 것
 - 대리 신청의 경우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 필요)
 - 친권자 :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 신청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소홀로 타인에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발급받으려 온 신청인에 대하여는 철저히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 당일(23시까지)에만 가능하므로 청소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업무처리 부주의로 동명이인 청소년증 오신청,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본인 확인 방법(예시)〉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부착된 사진과 청소년의 얼굴 일치 여부 확인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학생증이나 여권 등과 대조 확인
 - 관계공무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물어보고 행복e음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 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 추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학교선생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등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청소년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
 -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 및 해당 청소년의 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 등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 가능

- 청소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 가능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3) 제 작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청소년이 신청·접수한 청소년증 관련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
-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 청소년증 제작비용 지급
 - (‘26년 단가) 기본형(비교통) 4,800원, 확대형(교통) 7,300원
 - 발급일자로부터 1년 이내 교통카드 불량으로 재발급 신청 시 : 한국조폐공사 부담

(4) 교 부

-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
 - ※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재 항목(수령자, 서명 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교부 이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분실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부 처리 필요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 전에 청소년할인 등록을 해야 청소년 요금이 적용됨을 반드시 고지
- 청소년이 읍·면·동장에게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발급된 청소년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
- 읍·면·동장이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

- 시·군·구에서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청소년증을 인수한 즉시 해당 읍·면·동에 인계
- 읍·면·동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인수한 청소년증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
- 청소년증을 교부한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청소년증 대리수령 범위〉

- 동일 세대원(직계 혈족),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사. 청소년증 재발급

(1) 재발급 사유

-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 교통카드 불량
-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청소년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 서류 첨부

(2) 재발급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세부 절차는 신규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
-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증을 첨부하여야 함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 분실신고(철회)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인과 동일)
- 절차
 - (신청권자) 분실신고서 작성·제출 → (담당공무원) 행복e음시스템 입력
 - ※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청소년증 분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만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재발급 신청
 - 청소년증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
- 유의사항
 - 철회 신고 : 분실신고된 건에 한하여 철회신고 가능
 - 분실신고 수정 : 최초 등록한 읍·면·동에서만 가능
 - ※ 분실신고 후 청소년증을 습득한 경우 분실신고 한 주민센터에서 분실 철회신고 해야 하고, 분실철회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당일(23시까지)에만 가능

자. 청소년증 파기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청소년증을 파기해야 함(시·군·구에서 취합하여 파기)
 - 수시 파기 :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청소년증
 - 분기별 파기 :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청소년증

차. (재)발급 관련 비용 처리

- 방문수령 시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부담
 - ※ 한국조폐공사에서 매월말 기준으로 계산서 청구(건당 발급비 : 기본형 4,800원 / 확대형(교통) 7,300원, 우송료 : 중량 기준)
- 등기수령 시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 부담,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 발급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시·군·구에 청구
 - ※ 등기수령 비용(우송료 3,820원)은 신청인에게 수령하여 담당자가 송금 처리

- ※ 신청인이 등기수령을 선택하였으나 수령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반송됨
- ※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비용이 우정사업 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등기수령 선택 시 처리방법(붙임4 참고)

- 신청인이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지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3,820원 수령
- 신청건별 접수 후 즉시 이체 원칙이나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계좌번호/예금주 :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 * 송금인명 :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정산문의 : 대전대덕우체국 우편영업과(042-930-2430)
- 주소지로 등기수령 비용 이체할 필요 없이 신청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처리

카. 행정사항

(1)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교부 시 안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청소년증 위·변조, 부정사용 등 인지 시(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준용)

-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직무는 공무원의 처리하는 직무만을 뜻하며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신청인이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에 체크한 경우
 - 정보연계 관련 절차는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별표 4] 참조
 -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유선 1388, <http://www.kdream.or.kr>)에 연계
- *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붙임 3] 서식

(4) 기 타

- 청소년증 발급시스템
 - 업무권한 부여절차 : (시·도, 시·군·구) 청소년 업무 주무과장 → 시·군·구 업무 담당자 및 읍·면·동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발급은 「행복e음」 또는 워드(한글, MS워드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 및 출력 가능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 청소년증 단체발급
 - 청소년증 개별 신청·수령 등에 따른 번거로움 완화를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 ①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추진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 준비사항, 신청 가능 여부 등 판단 필요
 -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밀집 지역의 경우 특정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②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하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의 의사, 본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시 공문 등 첨부(지자체에 따라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확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등록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주소 기재 요청 시

- 행복e음시스템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청소년증 뒷면에 주소 변경일자, 변경된 주소 등 기재

2-3

청소년증 교통카드

가. 목적

-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추가하여 대중교통 및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 활성화

나. 유의사항

- 교통카드 사용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교통카드 수령 후 반드시 할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교통카드 이용 전 소득공제 신청해야 함. 소급하여 공제 불가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부.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함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이즐 
사용 지역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사용 불가능 지역	- 경북 (군위, 봉화, 영덕, 영양, 청송) - 전남(진도)	- 버스(거창, 합천) - 경전철(김해)	- 경남(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일부 지역은 추후사용가능
사 용 처	교 통 - 버스, 고속버스(김해시 제외), 시티투어버스(서울·제주), 공항리무진(인천국제공항↔서울/경기, 인천권 운행) - 지하철(김해 경전철제외) - 기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누리로 등) - 공항철도 - 택시(서울, 울산)	교 통 - 전국 버스, 도시철도(제외: 거창, 합천 버스/김해 경전철) - 택시(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청도) - 유료도로(대구남부순환도로, 대구동부순환도로) - 기차(한국철도공사) -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 기타(대구수성투어버스)	교 통 - 버스(전국교통카드 통용지역 시내·마을버스, 경기·충남·경남 시외버스, 전국시외버스 KSCC 운영지역) - 지하철(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 택시(전국 캐시비 서비스 가맹 택시)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이즐 
사 용 처	가 맹 점	- 편의점(emart24, story way) - 유통점(KTX 열차 내 유인이동 판매대, 역사 내 카페스토리 웨이), 유통전문점(일부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 코레일 역사 내 브랜드매장(카페, 음식점, 잡화 등 600여개) - 제휴가맹(레일플러스 스티커 부착 제휴가맹점) - 전국 우리은행, 농협, 롯데(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등)	- 편의점(전국 emart24, 대구·경북지역 GS25, 세븐일레븐, CU) - 제휴 가맹점(주차장, 테마파크, 구내식당 등)	- 편의점(세븐일레븐, CU, GS25, 이마트24) - 유통점(롯데마트, 롯데슈퍼, 롬스) - 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식음료(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파리바게트(롯데계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스쿠치, 잠바주스, 빗은, 오봉도시락, 밀크밥버거, 커피앳웍스(SPC계열)) - 기타(주차장, 자판기, 구내식당, 사직야구장, 음식물종량제 등)
	충전시설	- 철도역(전국 코레일 기차역) - 지하철 내 충전기 및 발매기 - 편의점(storyway, emart24) - 우리은행·농협·롯데 ATM * 농협 ATM은 농협계좌이체 충전만 가능 - 모바일(레일플러스 APP) * 안드로이드 2.2이상/ IOS 5.0이상	- 대구지하철 내 역무실, 무인 충전기 - iM뱅크 전 영업 지점/ATM, 편의점 (전국: emart24, 대구/경북: GS25, 세븐일레븐, CU) - 모바일(iM원패스, iM뱅크, iM샵, 스마트터치) - 제휴 가맹점(원패스 판매/충전소 마크가 부착된 토큰판매소 및 가맹점)	- 편의점(세븐일레븐, CU, GS25, emart24) - 수도권/부산지하철 무인충전기 (대구지하철 무인충전X) - 전국 이즐 충전소, 롯데슈퍼(일부), 롯데ATM(CD기 제외) - 신한은행, 우리은행 ATM: 현금·계좌 충전 - 경남은행 ATM: 제휴 발행된 캐시비(이즐)카드만 충전가능 - 롯데월드 어드벤처, 롬스 - 이즐충전소 앱
	소득공제 신청	※ 소급하여 소득공제 신청 불가하므로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 필요		
할인등록	소득공제 신청	- 홈페이지, 어플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메뉴 → 할인카드 등록 → 소득공제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내 카드 관리 → 카드 보유내역조회 → 소득공제 카드 체크 → 고유식별번호 수집동의 (소득공제 신청 시 최초 1회에 한함)	- 이즐충전소 앱 > 더보기 > 소득공제 적용/해지 > 카드 태그 후 정보 입력 ※ 이즐충전소 앱 내에서 소득공제 신청 가능
	할인등록	- 홈페이지 또는 R+어플 → 카드 등록 → 할인카드등록 → 카드번호입력 및 생년월일 입력 ※ 최초 사용(결제) 후 10일 내 반드시	- 홈페이지 → 청소년·어린이 할인카드 등록 → 카드 등록/사용자 변경 → 카드번호/생년월일 등록 → 등록 완료	- 세븐일레븐 / CU / GS25편의점 / 이마트24 / 이즐충전소 앱에서 생년월일 등록 → 할인 요금 적용 (통합권종카드 표기 카드)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이즐 
	할인등록 필요 (미등록시 일반요금 전환) ※ 시스템 할인등록기간(최대 5일) 동안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 징구 필요	※ 최초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생년월일을 등록 하여야 요금할인 적용 단, 10일 이내 카드 미등록 및 등록된 카드번호 삭제, 잘못된 생년월일 입력 시 일반요금이 결제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 - 등록일 기준 최대 3일 후 부터 변경 요금 적용 - 등록일 기준 3일내 대중교통 이용 시, 단말기 수동 조작 필요 (지하철 불가) ※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카드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책임은 카드 사용자에게 있으며, 일반인이 어린이/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승차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역조회 및 소득공제 필요 시 이즐충전소 앱 가입 후 카드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환불 신청	※ 분실/도난 시 환불 불가 - 전국 코레일 역사(전국기차역, 코레일운영전철), 우리은행ATM(계좌보유시) ※ 20만원 이하에 한하여 현장에서 잔액 환불 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20만원 초과 및 훼손카드는 역 방문 반환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반환접수 가능	- 전국 iM뱅크 영업점 : 원패스 ※ iM뱅크 창구 직접 방문 접수 - 편의점 : 통합권종교통카드 (전국 : emart24, 대구/경북 : GS25, 세븐일레븐, CU) ※ 환불봉투 수령하여 우체통에 접수 ※ 카드실물 지참하여 방문 신청 ※ 교통카드 구입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소정의 환불 수수료 발생 (1만원 이상 : 잔액의 1.5%, 1만원 미만 : 200원)	- 이즐(캐시비)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 주요 편의점(일부 매장 제외) ※ 2만원 미만에 한하여 잔액 환불 가능 (환불수수료500원) ※ 신한은행 ATM, 우리은행 ATM : 잔액 50만원 이하(계좌 보유시) 환불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홈페이지 → 카드잔액 환불 → 환불 봉투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 직접 환불접수 가능
특별혜택	- 철도승차권 구입 시 KTX 마일리지 1% 추가 적립	- 가맹점별 프로모션 진행 여부에 따라 상이	- 가맹점별 할인 프로모션 시행 여부에 따라 상이 ※ 자세한 내용은 이즐충전소 앱 이벤트 확인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이즐 
콜센터	1544-7788(내선 5)	080-427-2342	1644-0006
홈페이지	http://railplus.korail.com	http://www.imupay.co.kr	http://www.myezl.com
사업자명	코레일네트웍스(주)	(주)M유페이	(주)이동의즐거움

* 제휴 가맹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참조

* 위 표에 명시된 사용처는 교통카드 충전액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을 의미하며, 결제 시 청소년 할인 적용 여부와 별개임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신청'에 체크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원하는 교통카드명 기재

※ **사용가능지역, 사용처 등 '나. 교통카드별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청소년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 **카드종류별 사용불가 지역**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기능 추가 여부 등 안내

○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미신청'에 체크

다. 환불 신청

○ 도난/분실

- 선불형 교통카드 도난/분실은 현금 분실과 동일하므로, 교통카드사 정책에 따라 잔액 환불처리 불가능(카드 뒷면 이용안내에 표기)

○ 정상카드 환불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카드로 이사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잔액을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 '나. 교통카드별 주요내용'의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이 신청
- 환불수수료 발생

※ 자세한 내용은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 참고

라. 칩 불량카드 환불 처리

-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 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카드 환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소년증 교통카드의 특성상 시·군·구에서 처리 원칙

①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인 경우

청소년증 절단	서식 작성 및 절단카드원부	처 리
	 	한국조폐공사 * 재발급 시 확인 교통카드사 * 충전 금액 환불(10일정도 소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증 뒷면의 교통카드번호 및 부분의 절단선을 따라 절단 ※ 실제 청소년증에는 절단선 표시 없음	(신청인) 환불신청서 작성, 제출 (담당 공무원) - 절단된 상단은 한국조폐공사 환불 서식에 부착하여 봉투에 넣음 - 절단된 하단은 환불신청서와 함께 환불 봉투에 넣음 ※ 서식은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청소년 사업안내 서식6(p.169~184) 출력 ※ 봉투 서식은 오려서 규격봉투에 붙여 부착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재발급 (교통카드사) - 환불 처리 ※ 전산 확인 후 환불까지 10일정도 소요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재발급비 처리 : 칩 불량 청소년증(1년 이내) 재발급비는 신청 시·군·구청에 청구되지 않음
- ※ 청소년증 상단은 반드시 한국조폐공사로 반납해야하며, 우송료는 기존과 동일

②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된 경우

- 청소년증 절단 후 하단만 교통카드사로 송부, 상단은 시·군·구에서 파기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발급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발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 절단 방법 등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와 동일

〈일반 환불처에서 칩 불량 청소년증을 교통카드사로 잘못 발송한 경우〉

- 청소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해당 청소년증이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한국조폐공사로 상단 전송
-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 : 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상단 전송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 제1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2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철회신청서
서식 제4호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 제5호	청소년증
서식 제6호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용)

[서식 제1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초·중·고 재학 중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고등학교 졸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사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교통카드 가능	[]신청 : 종류()	[]신청하지 않음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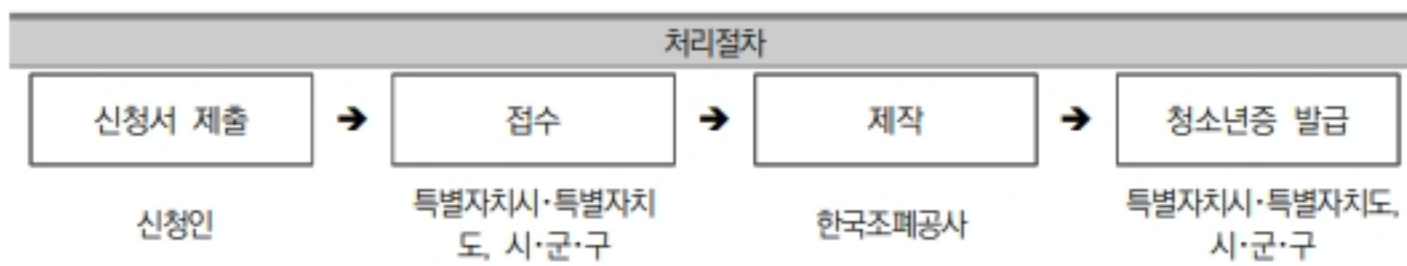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1. 사진 1매(앞쪽의 사진란에 붙여 제출합니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에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19세가 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에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2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 진 (3.5cm×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간	주 소				
인					
발급신청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 의 사 항

※ 발급 시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1.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은 이 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 -)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서 []철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철회)인	성명	분실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철회)내용	분실일자	장소	
	분실(철회) 사유		
청소년증의 습득			
		년	월 일
위와 같이 청소년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철회)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청소년증 분실신고만 할 때 사용하시고,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신고(철회인)’란은 적지 않으며, “청소년증의 습득”란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나이므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분실된 청소년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철회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편
2026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제2편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제3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제4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II.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249

[서식 제5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4.〉

(앞쪽)

청 소 년 증	
사진 (2.5cm × 3cm)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주소 : _____ 유효기한 : _____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86mm × 54mm(플라스틱(PVC))

(뒤쪽)

연월일	주소 변동 사항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서식 제6호]

■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 레일플러스 - 환불신청서




환 환 신 청 서 (반드시 카드와 본 신청서를 봉투에 동봉해주세요.)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환불서비스 처리에 대한 안내, 고객과의 소통
보유 및 이용기간	반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반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 코레일 및 코레일메트릭스카는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보유합니다.
환불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 환불 신청서

☐ 동의 ☐ 동의하지않음 성 명 : _____ (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카드재교부	☐ 예 ☐ 아니오 (불량카드에 한함)
Rail+ 카드 종류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Rail+ 카드 번호	- - -
신 청 인	고객명	입금은행	은행명
	연락처		예 금 주
			계좌번호

▶ 연이자를 통해 반환금원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사유

☐ 카드 인식이 안되는 경우
(사용처 및 차장번호 : _____)

☐ 출전이 안되는 경우(출전처명 : _____)

☐ 외항이 훼손 및 파손된 경우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된 카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용 후 1년 이내 불량카드는 카드재교부 또는 카드 값을 지급해 드립니다.
- 파손카드는 구멍뚫림, 구멍, 휘어짐, 박열,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 전송상, 압제나 손상 등 기계적 고장 또는 과실로 훼손된 Rail+카드입니다.
- 출전기에서 잔액 인식이 가능한 경우 5만원 이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환 환 보 관 조 (반환금이 인금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환불서비스 처리에 대한 안내, 고객과의 소통
보유 및 이용기간	반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반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 코레일 및 코레일메트릭스카는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보유합니다.
환불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 환불 보관조

☐ 동의 ☐ 동의하지않음 성 명 : _____ (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카드재교부	☐ 예 ☐ 아니오 (불량카드에 한함)
Rail+ 카드 종류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Rail+ 카드 번호	- - -
신 청 인	고객명	입금은행	은행명
	연락처		예 금 주
			계좌번호

▶ 연이자를 통해 반환금원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사유

☐ 카드 인식이 안되는 경우
(사용처 및 차장번호 : _____)

☐ 출전이 안되는 경우(출전처명 : _____)

☐ 외항이 훼손 및 파손된 경우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된 카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용 후 1년 이내 불량카드는 카드재교부 또는 카드 값을 지급해 드립니다.
- 파손카드는 구멍뚫림, 구멍, 휘어짐, 박열,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 전송상, 압제나 손상 등 기계적 고장 또는 과실로 훼손된 Rail+카드입니다.
- 출전기에서 잔액 인식이 가능한 경우 5만원 이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① 환불 신청서 작성

[이하 보관조·고객 보관용]
정확하여 반환금 입금 완료까지 고객 보관.
[환불 신청서, 본사 송부용]
카드와 동봉하여 봉투를 우체통에 투입

② 반환 접수 및 처리

봉투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인국자료까지
약 14일 소요됩니다.

③ 반환 완료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반환 봉투로 접수된 카드는 전량 폐기하여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반환 관련 문의사항은 하단에 기재된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railplus.korail.com>

고객센터 1544-7788 (내선 4번을 누르세요)

○ 레일플러스 - 환불봉투

보내는 사람

반드시 카드와 신청서를 넣어주세요

받는 사람

전국호환 선불 교통카드

Rail+

서울시 중구 청파로 426 철도빌딩 6층 611호

레일플러스카드 반환 담당자 앞

0

4

5

0

9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2.22 ~ 무기한

서울중앙우체국
제41527호

○ 원패스 - 환불신청서



iM유페이 환불 신청서

(우편 발송용)

■ 카드 실물이 통통되지 않은 환불 신청은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 기재		예상잔액	
카드상태	☐ 인식불가 ☐ 파손 ☐ 일부 교통 사용 불가 ☐ 기타()			
성명			연락처	
환불계좌	아래 기재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 불가) * 은행: _____ * 계좌번호: _____ * 예금주: _____			
본인은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안내를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본인확인, 환불처리, 환불관련 고객민원처리, 카드반송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카드번호, 고객명, 연락처,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처리 (단, 민원 분쟁 소지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 보존)
 - 보존기간 : 환불금액 1만원 이하일 경우 1년, 1만원 초과일 경우 5년
 - 보존사유 : 환불금액 정산 및 고객민원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소송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대비
 - 파기절차 : 보존기간 만료 시 카드실물 및 신청서는 iM유페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 처리

본 신청인은 작성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인/서명)

절 취 선

iM유페이 환불 신청서

(고객보관용)

■ 환불 완료 시까지 반드시 보관 바랍니다.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 기재	발송일자	20 년 월 일
카드상태	☐ 인식불가 ☐ 파손 ☐ 일부 교통 사용 불가 ☐ 기타()		

■ 주의사항 및 환불규정 안내

- 본실, 도난, 습득카드는 환불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원패스카드 외 타사카드는 접수 시 기재하신 주소로 반송 처리됩니다.
- 고객보관용 신청서는 환불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송 및 기타 문제 발생 시 고객보관용 신청서가 없을 시 환불처리가 불가 합니다.)
-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은 불가 합니다.
- 기입하신 예상잔액과 실제 환불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접수 후 D+10 영업일 이내 등록된 환불계좌로 카드 잔액 환불처리됩니다.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안내

- 홈페이지 : www.imupay.co.kr
- 고객센터 : 080-427-234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원패스 - 환불봉투



청소년증 환불신청 봉투 양식 (봉투 부착용 우편 표지)

■ 청소년증 환불봉투 표지 부착 안내

- 봉투 표지는 절취선에 따라 자르신 후 규격사이즈(225*105) 봉투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카드 실물과 환불신청서를 동봉하여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사이즈 우편 봉투는 별도 구매 후 이용 바람에, 규격사이즈의 봉투가 아닌 경우 반송되오니 주의바랍니다.

✂ 절취선에 따라 자르신 후 봉투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 반드시 카드실물과 신청서를 동봉하세요

☐ ☐ ☐ ☐ ☐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동일빌딩 9층 (주)아이엠유페이

42030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08.01~2022.07.31

대구수성우체국

제40201호

이엠유페이 Onepass

○ 이즐 - 환불신청서

환불 신청서
(우편 발송용)

여기에 교통카드를 부착하여 주세요

카드 뒷면 교통카드 번호가 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카드 실물이 동봉되지 않은 환불 신청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카드 이 부착시 배송중 카드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환불 접수된 카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교통카드 실물 부착 방법 안내



※ 카드 뒷면 이즐 번호가 보이도록하여 좌측 중간에 부착해 주세요.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발송주소, 예금주,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환불카드에 입력된 정보	본인확인, 환불처리, 카드 반송, 만원처리, 환불 결과 SMS발송	· 환불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 환불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본인은 작성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환불이 제한됩니다.)

□ 동의 □ 마동의 서명 : (자필서명) (인)

● 환불 신청 정보

카드번호	* 카드실물을 접수증과 함께 꼭 동봉하여 주세요! 실물 없을 시 환불 불가		
신청인	(필수 기재)	예상잔액	
카드상태	☐ 인식안됨 ☐ 파손(휘어짐, 긁, 노후, 변형 등) ☐ 일부 교통 사용 불가(오류메시지, 과다차량) ☐ 정상 ☐ 기타()	연락처	연도별 번호 기재 시 환불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 받아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환불금은 아래 기재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 됩니다.(연도별, 세무처 제출한 환불 불가)	은행명	예금주명
본인은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안내를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환불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 (자필서명) (인)			

※ 만 14세 미만 회원의 카드는 법정대리인 동의 후 환불 처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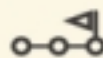
환불 신청서 (고객 보관용)

● 환불 신청 정보

카드사		카드번호	(필수 기재)
카드상태	☐ 인식안됨 ☐ 파손(휘어짐, 긁, 노후, 변형 등) ☐ 일부 교통 사용 불가(오류메시지, 과다차량) ☐ 정상 ☐ 기타()	카드발송일	20 년 월 일



환불봉투는 카드 부착 및 신청 정보 작성 후 가까운 우체통에 투입해 주세요.



본사 도착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잔액이 입금됩니다. (카드번호 및 잔액 확인이 불가할 경우 환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불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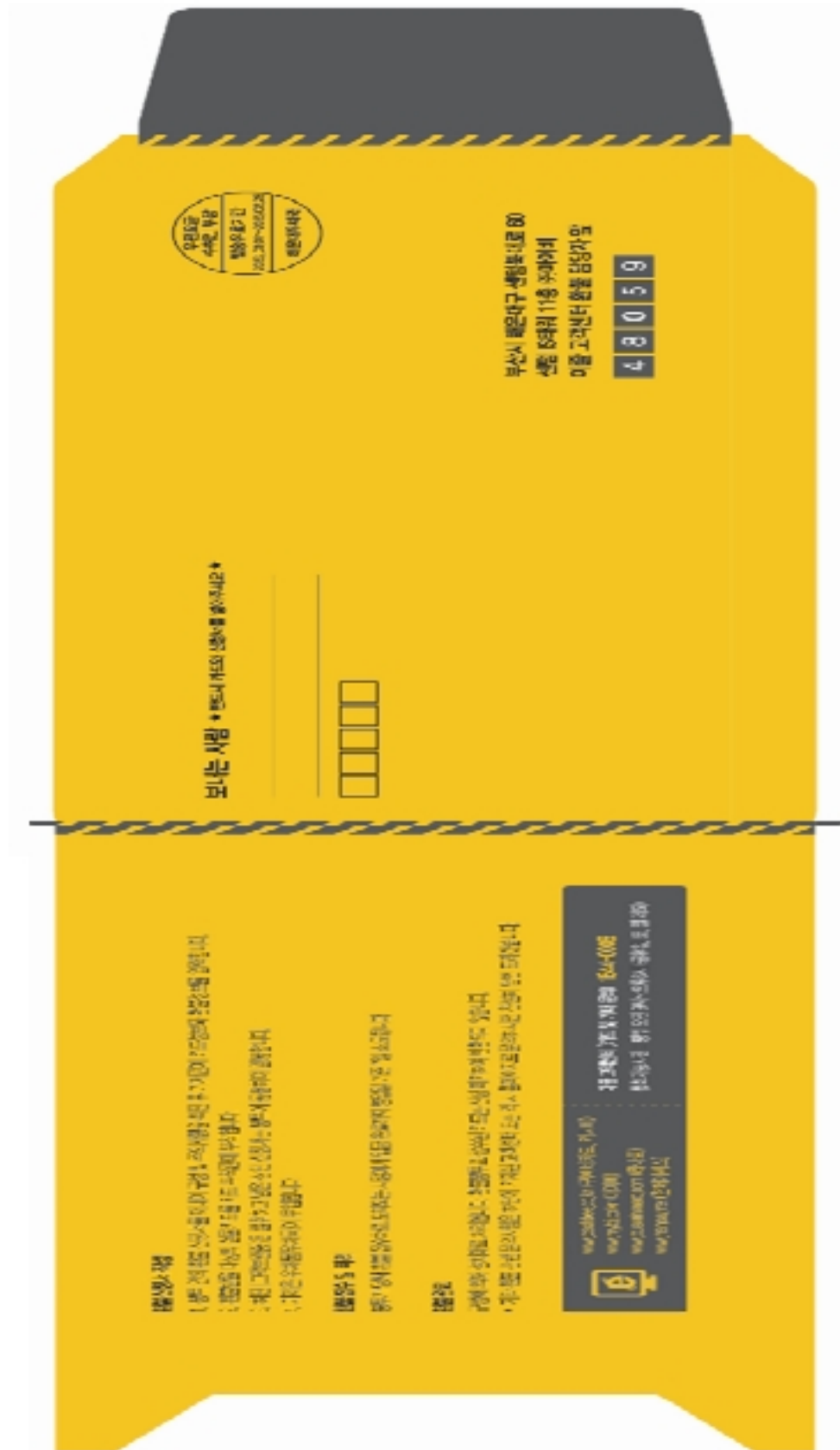
1. 이즐 카드, 구. 캐시비카드는 최초 출전일로부터 2년 내 고장 시 카드 구입비를 환불 해 드립니다. (외형상 정상이나 단말기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2. 실물카드가 반환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정상 및 파손(휘어짐, 일부 절단, 긁, 노후)카드는 잔액만 지워드립니다.
4. 정상카드는 소정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분실, 도난, 승목카드는 환불 접수 되지 않습니다.
6. 이즐카드, 구. 캐시비카드, 아이비카드, 마이비, 하나로카드, 한페이카드 외 타사카드는 접수 시 기재하신 주소로 반송됩니다.
7. 환불접수된 카드와 접수증은 만원처리의 목적으로 1년간 보관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즐 고객센터 (카드 및 기타 문의) 1644-0006
통화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토, 일 제외)

www.cashbee.co.kr www.mybi.co.kr www.busanhanaro.com www.hanpay.net

○ 이즐 - 환불봉투

앞면



뒷면

■ 환불봉투(조폐공사)

보내는 사람 (우) _____ _____	받는 사람 (우) 34037 대전 유성구 테크노 10로 7 (탑림동)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카드부 청소년증 담당자
--	---

[조폐공사_카드반납]

칩불량카드 실물 반납(한국조폐공사)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활동정보(www.youth.go.kr)	
연월일	주소 변경

교통카드 이용안내

1. 본 청소년은 대중교통과 유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있습니다(카드에 이용기간 표시).
2. 청소년의 여권/청소년 확인증 등에 반드시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청소년을 위한 발급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청소년의 본인인계 증명서(청소년 확인증)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3년 이내 본인인계 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청소년 확인증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청소년은 본인 확인서 및 본인인계 증명서 등 본인인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안내를 청소년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앞면) 기준 1년 이내 카드
- 카드 실물 투명테이프 부착(교통카드번호 윗부분)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초·중·고 재학 및 졸업 여부, 발급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교통카드 기능 신청 여부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소년증 발급 관련 본인 확인 및 제작, 수령 등에 관한 업무
- 청소년증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기타 청소년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후 해당 청소년이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청소년증 발급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절차
- 청소년증 적정 이용 관리업무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및 등기 발송 업무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본 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및 복지지원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현황(2003~2024)

(단위 : 건)

구분	2003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44	40,898	43,543	49,438
서울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49	9,992	10,633	10,624
부산	-	381	672	971	1,724	2,198	2,492	2,399	2,868	2,944	3,202
대구	-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69	2,304	2,216	2,573
인천	-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42	2,916	3,012
광주	-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3	1,025	1,215
대전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4	885	1,044	1,446
울산	-	86	105	220	640	844	897	950	1,060	1,180	1,590
세종	-	-	-	-	-	-	-	-	-	32	110
경기	-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2	11,007	11,232	12,555
강원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1,173	1,773
충북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29	1,206	1,362
충남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5	1,244	1,733
전북	-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7	1,506	1,776
전남	-	244	175	141	390	499	616	624	718	896	1,130
경북	-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38	1,663	1,935
경남	-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08	2,326	2,906
제주	-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1	307	496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0,663	93,536	114,250	188,562	165,408	142,502	182,644	153,547	169,190	149,856	152,512
서울	9,779	9,619	9,786	13,609	11,395	13,122	15,155	15,694	17,883	17,052	17,431
부산	3,174	3,899	6,326	11,890	6,432	11,704	9,332	10,664	8,090	6,823	6,760
대구	3,006	3,406	2,939	8,616	9,225	10,514	6,291	5,392	6,414	5,910	6,040
인천	3,126	3,828	3,223	5,180	4,001	4,683	7,801	6,000	5,837	6,311	8,372
광주	1,561	1,899	1,779	6,037	8,891	4,399	5,487	4,826	6,286	6,100	5,142
대전	1,447	2,403	1,636	4,646	5,913	4,887	6,779	6,870	7,461	6,739	6,678
울산	1,243	2,490	1,424	3,791	4,125	1,964	2,071	1,931	3,182	2,517	2,670
세종	99	473	1,434	2,460	3,381	2,918	3,798	3,318	3,554	3,012	2,513
경기	12,737	24,187	39,839	63,327	34,855	38,722	60,701	51,419	57,661	44,578	49,278
강원	1,704	3,585	5,899	9,626	8,921	4,840	6,572	4,338	4,994	4,835	4,479
충북	1,306	2,519	1,771	3,631	2,648	3,276	6,646	5,560	5,571	6,143	3,697
충남	1,701	3,488	5,008	9,181	6,290	4,808	8,617	8,506	5,649	5,369	5,676
전북	1,942	3,407	4,630	9,203	11,406	8,428	8,280	5,990	7,900	8,011	8,436
전남	1,362	4,143	5,682	7,248	11,769	5,272	8,963	5,610	5,722	7,349	6,834
경북	2,334	14,179	10,816	12,676	17,885	12,220	10,494	6,788	11,073	7,981	7,153
경남	3,640	8,253	10,595	14,134	15,475	8,781	13,621	8,355	9,507	9,037	9,495
제주	502	1,758	1,463	3,307	2,796	1,964	2,036	2,286	2,406	2,069	1,853

* 출처 : 한국조폐공사(2003~200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0~)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안내

1. 목 적

청소년증 신청 접수 후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청소년 편의 증진 제고(한국조폐공사 개발)

2. 서비스 대상 : 청소년증 신청인 중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자

3. 시행일자 : 2008. 8. 1.

4. 서비스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2회 발송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회사이트(www.komsco.com) 설치·운영
 (조폐공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카드발급조회)

〈문자메시지 예시〉

① 접수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한국조폐공사에 접수됨
www.komsco.com 검색가능」

② 배송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시군구로 발송함
 5일 후 수령가능 - 한국조폐공사」

5. 협조사항

- 청소년증 신청자가 발급 진행 문자메시지(SMS) 수신을 원할 경우
 - 읍·면·동 청소년증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 / 청소년증 신청 및 교부 내역등록」의 신청자정보(HP)에 신청자 휴대폰 번호 입력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콜 센터(1577-4321) 문의

□ 정산 방법

- 입금기한: 접수 후 즉시 입금 원칙 *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지정계좌: 우체국 312884-01-006047(예금주: 대전대덕우체국장)
- 입금자명: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예시) 문평동(홍길동), 중앙동김나래, 신림10동김철수
 - * 동명이 긴 경우에도 7자까지 입력하면 우체국 담당자가 최대한 확인 및 연락 예정

〈입금자명 오류발생 주요 사례〉

연번	입금자명	처리불가 사유	비 고
1	충북 충주시, 광주 북구	정확한 접수동 확인 불가	회계부서 입금시 동명이 생략되므로 우체국 담당자와 유선협의 필요 (☎ 042-930-2412)
2	중앙동, 태화동	중복지역 다수 존재	
3	홍길동 (주민센터장, 담당자 이름 등)	접수기관 확인 불가	

- 입금단위: 신청건별 입금 * 신청자 확인을 위해 건별 입금 필요
 - ※ (예시) 중앙동에서 3명(김영희, 이철수, 박진희)이 등기수령을 신청한 경우
 - 중앙동(김영희)/ 중앙동(이철수)/ 중앙동(박진희)로 각각 3,820원씩 3건 입금
 - * 온라인(복지로)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 대금이 우정사업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유의사항

- 회계부서에서 일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명이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되도록 처리
- 입금자명 정정이 어려운 경우 입금 후 우체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내역 등 확인 필요
(대전대덕우체국 영업과 ☎042-930-2412)
 - ※ (예시) 진주시 ○○동 회계부서 입금 시 '경남 진주시'만 표기되어 확인 불가
- 등기비용 처리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담당자 인사 이동 또는 부재 시 인수인계 및 대무자 지정 등 철저
- 우편요금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정산기한 준수
- 등기비용 정산 후 별도 공문 발송 불필요